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교육자료



2022. 1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교육자료



2022. 11.

목 차



제1장 중대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개요 1

제2장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시행령 2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제1조(목적) 27	제1조(목적) 27
제2조(정의) 27	제2조 삭제 27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32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33	
제5조(과실범) 34	
제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34	
제7조(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35	
제8조(누범의 가중) 35	
제9조(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35	
제10조(양벌규정) 35	
제11조(주정) 36	
제12조(과징금) 36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36
	제4조 삭제 37
	제5조 삭제 37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7
제13조(행정처분 등) 39	제7조 삭제 39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40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39
제15조(포상금) 40	제9조(표지판) 40
	제10조(포상금의 지급) 40
	제11조(환경감시관의 자격·임명) 41
	제12조(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42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43
	제14조(활동비 지급) 43
	제15조(증표) 43

목 차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제15조의2(환경감시관) 44	
제15조의3(환경감시조직) 47	
제16조(사업장의 출입 등) 47	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47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47	
제18조(자료의 전산관리) 48	
제19조(권한의 위임) 48	제17조(권한의 위임) 48
부칙 49	제18조(보고) 49
	부칙 49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별표 71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5

제3장

- (부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54호, 2020. 12. 4., 제정] 81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95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교육자료

C H A P T E R

01

중대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개요





제1장 중대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개요

■ 제도시행 취지·목적

- 측정기기 조작, 서류 거짓 작성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배출 하는 등 환경범죄가 증가
 - 악의적이고 위험성이 큼에도 적발이 곤란하여 특별한 관리 필요
 - 징벌적 책임을 묻기 위한 기존 과징금 제도*는 실효성이 없어, 불법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의 개선 필요
 - * 불법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의 2~10배에 해당한 과징금액은, 불법배출로 인한 부당이익 대비 미미, 초과부과금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 과징금액 미미 등
- ☞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환노위 대안 제안(‘19.10월), 확정·시행(‘20.11.27)

■ 근거 법령(규정 등)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20.11.27일 시행)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54호, 2020.12.4.)

■ 과징금 구성 : ① 위반부과금액 + ② 정화비용

- (위반부과금액) 위반 사업장의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의 5% 이내
 - 매출액이 없거나(휴업 등) 산정 곤란시(자료훼손 등)에는 10억원 이내
- (정화비용)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 과징금 부과대상 : 5개의 행위유형 【붙임1 참조】

- ① 특정유해물질 불법 배출, ② 측정기기 조작 등을 통한 특정유해물질 배출행위,
- ③ 서류·조작 등을 통한 유독물질 배출행위, ④ 취급기준 위반을 통한 특정유해화학물질 배출행위, 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행위

**■ 위반부과금액 결정(부과기준) : ① 기준부과율 + ② 위반행위별 증대성 가중치
+ ③ 위반기간별 가중치**

① (기준부과율) ①매출액 규모와 ②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① 매출액 규모 (최근 3년 평균)	② 위반행위 횟수 (최근 5년간)	
	1회 위반	2회 이상 위반
중소기업 규모 이내	매출액의 1.0%	매출액의 2.6%
중소기업 규모 초과		매출액의 3.1%

※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정액과징금 부과

② (위반행위별 증대성 가중치) 적용법률 최고형량 기준으로 차등 부과

구 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별금 or 1천만원의 과태료	징 역 형			
			1년 or 2년	3년	5년	7년
매출액 가중치	0%	0.2%	0.4%	0.6%	0.8%	1.0%

③ (위반기간별 가중치) 위반행위 전체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구 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매출액 가중치	0%	0.3%	0.6%	1.0%

〈 참고 : ① + ② + ③에 따른 최대 과징금 부과금액 현황 〉

위반횟수	매출액 규모	기준	증대성 가중치	위반기간 가중치	위반부과 금액
1회 위반	중소기업 규모 이내	매출액의 1%	+	1년 미만 0% 1~2년 0.3% 2~3년 0.6% 3년 이상 1% (매출액기준)	매출액의 최대 2.5%
	중소기업 규모 초과				
2회 이상 위반	중소기업 규모 이내	매출액의 2.6%	+	=	매출액의 최대 5%
	중소기업 규모 초과	매출액의 3.1%			

■ 정화비용 결정(산정방법) : ① 오염물질 제거비용 + ② 원상 회복비용

(단, 정화비용 면제 또는 유보 가능)

- (정화비용 범위) 오염물질 제거비용, 원상 회복비용과 이를 위해 필요한 조사·설계·검증 비용을 포함하되, 손해배상비용은 미포함
- (정화비용 면제·유보)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상회복 하거나(자발적·환경부장관 승인시), 정화비용 산정에 장기간 소요시 등

◇ 정화비용 유보(환경단속법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8항)

- ① 피조사자가 정화의사 표시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② 정화비용 산정에 장기간 소요로 위부과금액을 먼저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정화명령 등 다른 행정수단의 진행경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과징금 감면(감면기준) : ① 자진신고 시점 + ② 조사협력 정도 + ③ 공동 불법행위 최초신고 여부 (위반부과금액만 해당)

- (대상) 위반사실을 알게 된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

* 시정 : 위반행위의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정화,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 (세부 감면기준·범위) 자진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기준과 조사협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감면기준·범위 결정

① 자진신고 시점		② 조사 협력 정도	③ 공동불법행위 입증증거 최초 제공자		최대 감면비율 [*] (①+②+③)
신고시점	감면비율		여부	감면비율	
환경부 인지 이전	30% 이내	+	여	30% 이내	80% 이내
환경부 인지 후 과징금 조사 개시 전	10% 이내		부	0%	
				X	30% 이내

* 위반부과금액에 대한 감면비율로 감면금액을 결정하되, 허위 자료 제출자, 과징금처분 반복자, 사회적 파급효과 고려자 등은 과징금 감면 미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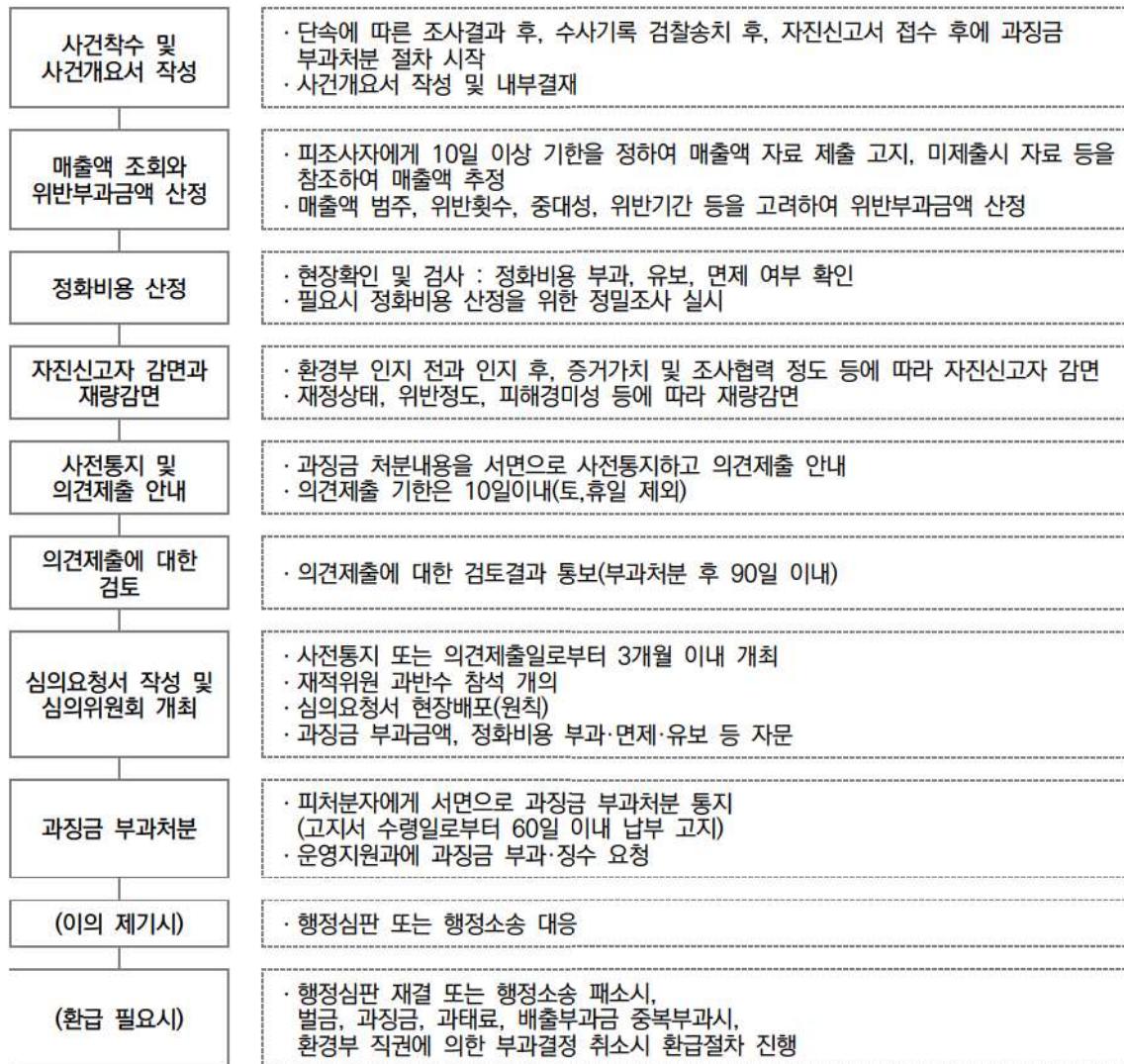
■ 과징금 최종 재량감면 (위반부과금액만 해당)

- (감면권자) 환경부장관
- (감면대상) 위반부과금액이 산정되고 감면을 받은 자
- (감면범위) 피처분자의 재정상태, 위반정도나 피해의 경미성 등에 비추어 비례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20% 이내에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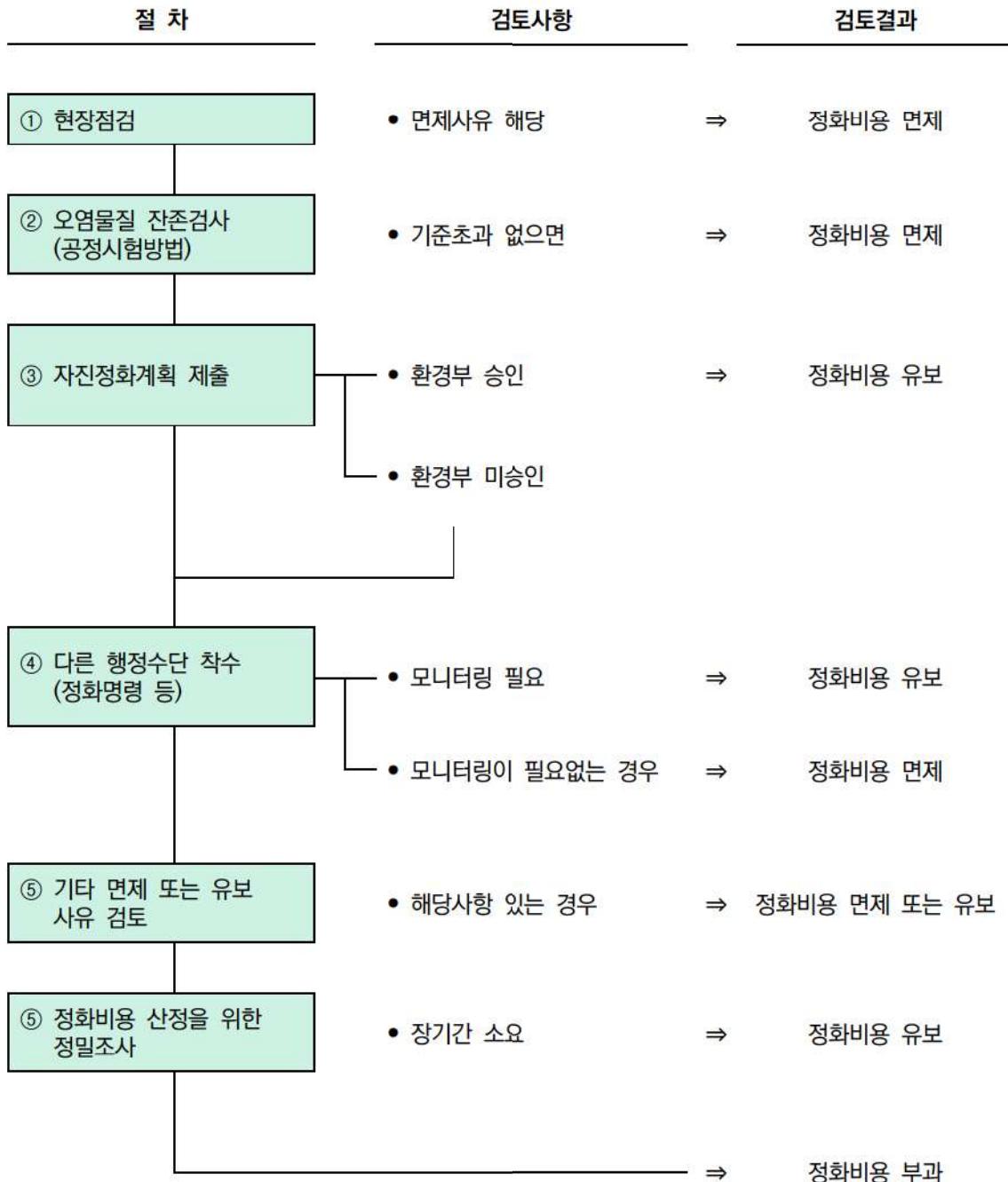
▣ 과징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환경부 감사관
- (위원) 9명 이내로 구성 / (자격) 법률·환경분야 10년이상 근무자
 - (당연직) 위반행위 관련 환경부 내 부서장 (최대 2명)
 - (위촉직) 민간인 5인 이상 (임기 2년, 1회 연장 가능)
- (역할) 과징금 부과 여부와 최종부과금액, 위반부과금액 감면사항, 정화비용 부과 여부와 부과금액 등에 대한 심의

▣ 과징금 부과절차 흐름도



■ 정화비용 결정 흐름도



■ 단속기관별 협조사항

○ 과징금 부과처분 의뢰시 검토 원칙

-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 초기에는 별칙사건(수사사건) 위주로 검토

※ 과징금 부과금액은 대부분 기업의 1년 순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부과처분 시 무조건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는 가정하에 검토(충분한 증거확보 필요)

- 제도의 취지는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환경범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단순 실수에 의한 위반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과징금 부과처분 의뢰 절차

절 차	시 기	내 용
①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붙임1) 참조
② 사전협의	• 검찰송치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부 과징금 담당과 사전협의 필요 (과징금 부과 가능성 검토)
③ 과징금 부과처분 의뢰	• 검찰송치 후 (기소의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략적인 사건의 개요와 단속자료 (수사자료X)를 첨부하여 본부에 과징금 부과처분 의뢰(사전협의 후)

※ 과징금 부과처분 의뢰 시 수사자료 열람 및 복사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과 사전협의 필요

붙임 1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

①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관련

< 특정유해물질 불법배출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아목) >

구분	행위유형	과징금		형벌 (벌칙)
		부과대상 특정유해물질	관련 조문	
가 목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대기환경보 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7년/1억원 (제89조 제3호)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 5년/ 5천만원 (제90조 제2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동법 제31조 제1항 제5호 7년/1억원 (제89조 제3호)
나 목	공공수역 특정수질 유해물질 누출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	물환경보전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3년/ 3천만원 (제77조)
	폐수배출 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	동법 제38조 제1항 5년/ 5천만원 (제76조 제3호)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구분	과징금			형벌 (벌칙)
	행위유형	부과대상 특정유해물질	관련 조문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비정상운영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	동법 제38조 제2항	7년/ 7천만원 (제75조 제3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 목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동법 제8조 제2항	7년/ 7천만원 (병과가능) (제63조 제1호, 제2호)
	특별자치시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埋立)하는 행위			
라 목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埋立)하는 행위			
	폐기물의 처리 기준 위반 환경오염	지정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조 제4호)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3년/ 3천만원 (제65조 제1호)
마 목	폐기물처리 시설 관리 기준 위반 환경오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폐기물 관리법 제31조 제1항	2년/ 2천만원 (제66조 제13호)
바 목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500mg/l 이상인 오수 · 분뇨	하수도법 제19조 제2항	(없음)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강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구분	과징금			형벌 (벌칙)
	행위유형	부과대상 특정유해물질	관련 조문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같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하수도법 제2조 제1호 · 제2호)	2년/ 2천만원 (제76조 제1호)	하수도법 제39조 제1항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분뇨의 부적정 처리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하수도법 제43조 제2항	1년/ 1천만원 (제77조 제7호)	1년/ 1천만원 (제77조 제9호)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분뇨의 수입·운반 및 처리 기준(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 또는 운반하는 행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500mg/l 이상인 가축분뇨 (가축분뇨법 제2조 제2호)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복합 요건

구분	과징금			형벌 (벌칙)
	행위유형	부과대상 특정유해물질	관련 조문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의 비정상 운영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없음)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하는 행위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의 비정상 운영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행위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중간 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가축분뇨법 제25조 제9항		
		*“제25조제 1항”은 오기	5년/ 5천만원 (제48조 제4호)	

구분	과징금			형벌 (벌칙)
	행위유형	부과대상 특정유해물질	관련 조문	
사 목	공공수역 분뇨 등 투기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500mg/l 이상인 분뇨 및 가축분뇨	물환경 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공공수역 토사 유출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규정없음	동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아 목	유해화학 물질 배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누출하는 행위	규정없음	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②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관련
< 측정기기 조작 등을 통한 특정유해물질 배출행위 >**

구분		과징금			벌칙 (행위1)
		행위1	행위2	관련 조문	
가 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 허위 작성	조업을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좌측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거나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 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을 배출한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2항	300만원 과태료 (제94조 제2항 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측정기기 조작 등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5년/ 5천만원 (제90조 제4호)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하는 행위		동법 제32조 제3항	200만원 과태료 (제94조 제3항 제2호)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5년/ 5천만원 (제90조 제4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기록 의 허위작성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동법 제39조 제1항	5년/ 5천만원 (제90조 제4호의3)
나 목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검사 허위기록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 및 농도 등을 검사 · 측정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동법 제44조 제10항	200만원 과태료 (제94조 제3항 제8호)
	수질 오염부하량 등의 측정결과 허위 작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 · 가동하고 그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좌측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기를 조작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가동하지 아니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 제4항	1천만원 과태료 (제82조 제1호)

구분	과징금			벌칙 (행위1)
	행위1	행위2	관련 조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 허위 작성	조업을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거나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 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을 배출한 자	동법 제38조 제3항	300만원 과태료 (제82조 제2항 제2호)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조작 등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 ·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동법 제38조의 3 제1항	5년/5천만원(제76조 제5호) 1천만원 과태료 (제82조 제3호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허위작성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 · 배출량 등을 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동법 제46조의 2 제1항	5년/ 5천만원 (제76조 제5호)	
폐기물 재활용환경성 평가 결과 미제출 등	폐기물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행위	좌측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거나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 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지정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을 배출한 자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의 3 제3항	1천만원 과태료 (제82조 제3호의4) 7년/ 7천만원 (병과가능) (제63조 제3호)
다 목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미입력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 ·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 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제45조제2항)에 입력하지 아니한 행위	동법 제18조 제3항	2년/ 2천만원 (제66조 제4호의4)
	폐기물유해성 정보자료 미작성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	동법 제18조의 2 제1항	1천만원 과태료 (제68조 제1항 제1호의6)

구분	과징금			벌칙 (행위1)
	행위1	행위2	관련 조문	
변경된 폐기물유해성 정보자료 미작성	사업장폐기물배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		동법 제18조의 2 제2항	3백만원 과태료 (제68조 제2항 제12호의2)
폐기물의 발생 등에 관한 보고서 미제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 ·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 · 승인 · 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동법 제38조 제1항	100만원 과태료 (제68조 제3항 제8호) (사업장 폐기물배출 업자: 300만원 과태료(제6 8조 제2항 제9호의2))
전용용기 생산 등에 관한 보고서 미제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동법 제38조 제2항	100만원 과태료 (제68조 제3항 제9호의2)

[3]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관련
 < 서류 · 자료조작 등을 통한 유독물질 배출행위 >

구분	과징금			벌칙 (행위1)
	행위1	행위2	관련 조문	
서류 · 자료조작 등을 통한 유독물질 불법배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좌측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서류나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을 불법배출한 자	화학물질 관리법 제23조 제1항	5년/1억원 (제58조 제3호의2)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동법 제41조 제1항	동법 제41조 제1항	삭제* (2020.3.3 1. 개정)
	피해최소화 등 조치명령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동법 제46조 제2항	동법 제46조 제2항	5년/1억원 (제58조 제7호)

[4]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관련
 < 취급기준 위반을 통한 특정유해화학물질 배출행위 >

구분	과징금			벌칙 (행위1)
	행위1	행위2	관련조문	
유해화학 물질 취급기준 위반 특정유해화학 물질 배출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 · 관리할 것	좌측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함으로써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3호~제5호) 중 어느 하나를 배출 · 누출한 자	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제1호~제6호	3년/5천 만원 (제59조 제1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 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 · 저장하지 말 것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교육자료

구분	과징금			벌칙 (행위1)
	행위1	행위2	관련조문	
	<p>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일 것</p> <p>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⑤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관련

< 무허가 · 미신고 배출시설 등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행위 >

구분	과징금			벌칙 (행위1)
	행위1	행위2	관련조문	
가 목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대기환경 보전법 제23조 제1항	7년/1억원 (제89조 제1호) * 신고관련: 5년/5천만원 (제90조 제1호)
	위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	좌측의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을 배출	동법 제23조 제2항	7년/1억원 (제89조 제1호) * 변경신고 관련: 100만원 과태료 (제94조 제4항 제1호의2)
	위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23조 제3항	100만원 과태료 (제94조 제4항 제1호의2)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38조의2 제1항	300만원 벌금 (제92조 제3호)
비산배출 시설 미신고행위	위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38조의2 제2항	200만원 과태료 (제94조 제3항 제5호)

구분	과징금			벌칙 (행위1)
		행위1	행위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미신고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동법 제44조 제1항	300만원 벌금 (제92조 제7호)
	위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44조 제2항	200만원 과태료(제94조 제3항 제7호)
나 목 폐수배출 시설 허가·신고 미이행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좌측의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을 배출	물환경 보전법 제33조 제1항	7년/7천만원 (제75조 제1호) * 신고관련: 5년/5천만원 (제76조 제2호)
	위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동법 제33조 제2항	7년/7천만원 (제75조 제1호) * 신고관련: 100만원 과태료(제82조 제3항 제3호)
	위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33조 제3항	100만원 과태료 (제82조 제3항 제3호)
다 목 폐기물처리 시설 승인·신고 미이행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좌측의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을 배출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3년/3천만원 (제65조 제18호) * 신고관련: 2년/2천만원 (제76조 제11호)
	위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면서 각각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29조 제3항	2년/2천만원 (제76조 제12호)

구분	과징금			벌칙 (행위1)	
	행위1	행위2	관련조문		
라 목	가축분뇨 처리시설 승인 · 신고 미이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 운영 중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행위	좌측의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가축분뇨 : 가축분뇨법 제2조 제2호)을 배출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	복합 요건
		위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면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1조 제2항	복합 요건
		위의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 운영 중인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1조 제3항	복합 요건

C H A P T E R

0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시행령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별표 71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5





연혁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제 정 1991.05.31. 법률 제4390호 전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94호 타법개정 2001.01.16. 법률 제6368호(지하수법) 타법개정 2001.03.28. 법률 제6452호(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2004.02.09. 법률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타법개정 2004.02.09. 법률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타법개정 2004.02.09. 법률 제7170호(약취방지법) 타법개정 2004.12.31. 법률 제7291호(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2004.12.31. 법률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타법개정 2004.12.31. 법률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2005.03.31. 법률 제7456호(자연공원법) 타법개정 2005.03.31.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타법개정 2005.07.29. 법률 제7643호(수로업무법) 타법개정 2006.09.27. 법률 제801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06.09.27.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타법개정 2007.04.06. 법률 제8338호(하천법) 타법개정 2007.04.11. 법률 제8343호(관광진흥법) 타법개정 2007.04.11. 법률 제8370호(수도법) 타법개정 2007.04.11. 법률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2007.04.27. 법률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2007.05.17. 법률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08.12.31.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타법개정 2009.02.06. 법률 제9432호(식품위생법) 타법개정 2009.06.09.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0.02.04. 법률 제10031호(약취방지법) 일부개정 2011.04.28. 법률 제10616호 타법개정 2011.07.21. 법률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2011.07.28. 법률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 정 1997.06.26. 대통령령 제15414호 전부개정 2000.06.27. 대통령령 제16870호 타법개정 2002.08.08. 대통령령 제17698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2005.07.22. 대통령령 제1895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5.12.09. 대통령령 제19171호 타법개정 2007.09.06. 대통령령 제20244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2007.09.27. 대통령령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07.11.15. 대통령령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타법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8호 일부개정 2013.10.22. 대통령령 제24808호 타법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2583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2.30. 대통령령 제27737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8.01.16. 대통령령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11.10. 대통령령 제31153호</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교육자료

타법개정 2011.08.04. 법률 제11016호(골재채취법)
일부개정 2013.05.22. 법률 제11790호
타법개정 2013.06.04. 법률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타법개정 2013.07.30. 법률 제119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4.03.24. 법률 제12521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4.06.03. 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02.03. 법률 제13175호
타법개정 2015.12.22. 법률 제13603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7.01.17.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9.11.26. 법률 제16616호
타법개정 2020.02.18. 법률 제17063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1.06.15. 법률 제18284호(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p> <p>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1. 4. 28.]</p>	<p>[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153호, 2020. 11. 10., 일부개정]</p> <p>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1. 10. 28.]</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7. 21., 2011. 7. 28., 2011. 8. 4., 2013. 5. 22., 2013. 6. 4., 2015. 12. 22.,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汚水)·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사.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 	<p>제2조 삭제 <2020. 11. 10.></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른 농약 및 원제(原劑)</p> <p>2. “불법배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불법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埋立)하는 행위 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 아.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누출하는 행위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p> <p>차.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p> <p>카.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p> <p>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p> <p>3.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p> <p>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p> <p>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p> <p>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p> <p>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p> <p>4. “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p> <p>가.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p> <p>나.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수입·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p> <p>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기물처리업</p> <p>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 제53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p> <p>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p> <p>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p> <p>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p> <p>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p> <p>자.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골재채취업</p> <p>5. “불법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가. 제3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p> <p>나. 제3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p> <p>다. 제4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p> <p>라. 제4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영업</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p> <p>마.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또는 영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p> <p>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1호 · 제2호에 따른 시설</p> <p>6. “사업자”란 배출시설이나 불법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7. “환경보호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 또는 섬을 말한다.</p> <p>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특별대책지역</p> <p>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 · 경관보전지역,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자연유보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시 · 도 생태 · 경관보전지역</p> <p>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특정 도서(特定島嶼)</p> <p>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p> <p>마.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 · 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p> <p>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습지보호지역</p> <p>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p> <p>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p> <p>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p> <p>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p> <p>카.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p> <p>8. “환경법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p> <p>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시멘트·석탄·토사(土砂)·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粉體)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는 제외한다.</p> <p>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p> <p>[전문개정 2011. 4. 28.]</p> <p>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①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협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2. 3.></p> <p>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제4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 1. 17.></p> <p>1.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원예업에 이용되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해당 용도로 이용 할 수 없게 한 자</p> <p>2. 바다, 하천, 호소(湖沼) 또는 지하수를 별표 1에서 정하는 규모 및 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킨 자</p> <p>3. 어패류를 별표 2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집단폐사(集團斃死)에 이르게 한 자</p> <p>[전문개정 2011. 4. 28.]</p> <p>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① 환경 보호지역에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p> <p>② 환경보호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제2호(「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3호,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3호(공원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1</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호 또는 「수도법」 제7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한 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2. 3.〉</p> <p>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환경보호지역을 그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전문개정 2011. 4. 28.]</p>	
<p>제5조(과실범) 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p> <p>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p> <p>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p> <p>[전문개정 2011. 4. 28.]</p>	
<p>제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9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같은 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併科)한다. 〈개정 2011. 7. 28., 2014. 3. 24.〉</p> <p>[전문개정 2011. 4. 28.]</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제목개정 2011. 7. 28.]	
<p>제7조(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p> <p>[전문개정 2011. 4. 28.]</p>	
<p>제8조(누범의 가중)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지 3년 내에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p> <p>[전문개정 2011. 4. 28.]</p>	
<p>제9조(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명령(철거명령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을 제거·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p> <p>[전문개정 2011. 4. 28.]</p>	
<p>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1. 4. 28.]</p>	
<p>제11조(추정) 사람의 생명·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이하 “생명·신체등”이라 한다)에 위해(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끼칠 정도로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생명·신체등에 위해가 발생하고 그 불법배출과 발생한 위해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는 그 사업자가 불법배출한 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4. 28.]</p>	
<p>제12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을 10억원 이내로 한다.</p> <p>〈개정 2019. 11. 26.〉</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p>	<p>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휴업 또는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 관련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p>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불법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p> <p>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특정대기유해물질</p> <p>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p> <p>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p> <p>라. 「하수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수 및 분뇨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중 각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천500밀리그램 이상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거나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한 자</p> <p>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4조제10항</p> <p>나.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4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제1항, 제46조의2제1항</p> <p>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p> <p>3.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서류나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유독물질을 불법배출한 자</p> <p>4.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p>	<p>③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한다.</p> <p>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한 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위반부과금액(이하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p> <p>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p> <p>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동불법행위를 환경부장관에게 최초로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자: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p> <p>④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 감면금액의 세부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20. 11. 10.]</p> <p>제4조 삭제 <2020. 11. 10.></p> <p>제5조 삭제 <2020. 11. 10.></p> <p>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함으로써 같은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누출한 자</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p> <p>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p> <p>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p> <p>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p> <p>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p> <p>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6.></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1. 납세자의 인적사항</p> <p>2. 사용 목적</p> <p>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p> <p>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횟수,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 등에 따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개정 2019. 11. 26.></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출함에 있어 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15조의2</p>	<p>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p> <p>④ 과징금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20. 11. 10.]</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제1항 각 호에 따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 받은 경우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뺀다.</p> <p>〈개정 2019. 11. 26.〉</p>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신설 2019. 11. 26.〉</p> <p>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개정 2019. 11. 26.〉</p> <p>⑧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p> <p>〈개정 2011. 7. 21., 2019. 11. 26.〉</p> <p>[전문개정 2011. 4. 28.]</p>	
<p>제13조(행정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② 불법배출시설이 제2조제4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영업을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배출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p> <p>〈개정 2013. 7. 30., 2014. 6. 3., 2017. 1. 17., 2020. 2. 18.〉</p> <p>1. 환경보호지역</p> <p>2.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을 말</p>	<p>제7조 삭제 〈2020. 11. 10.〉</p> <p>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전문개정 2011. 10. 28.]</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한다), 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바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 바깥지역을 말한다) 및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철거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불법배출시설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불법배출 시설 또는 그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4. 28.]</p>	
<p>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p> <p>[전문개정 2011. 4. 28.]</p>	<p>제9조(표지판)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 표지판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일반인이 보기 쉽도록 불법배출시설의 입구에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10. 28.]</p>
<p>제15조(포상금)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p> <p>[전문개정 2011. 4. 28.]</p>	<p>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삭제 <2013. 10. 22.></p> <p>②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그 신고내용이 환경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p> <p>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금액·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11. 10. 28.]</p> <p>제11조(환경감시관의 자격·임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경감시관(이하 “환경감시관”이라 한다)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p> <p><개정 2020. 11.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의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에 대한 감독·지원 나. 직제 제5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환경사법경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환경관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시 및 환경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p>② 제1항의 경우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그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환경감시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과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이하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라 한다)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담반을 구성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환경관계 법령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p> <p>〈개정 2020. 11. 10.〉</p> <p>[본조신설 2011. 10. 28.]</p> <p>[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 10. 28.〉]</p> <p>제12조(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①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감시관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부서의 소속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담반이 해산된 경우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경감시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0.〉</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1. 10.〉</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1. 강등 ·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2.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년 3.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본조신설 2011. 10. 28.]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 10. 28.>]</p>
	<p>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환경감시관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2. 환경오염사고 조사 3. 삭제 <2020. 11. 10.> 4.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시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 분석 및 통계관리 <p>[본조신설 2011. 10. 28.] [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 10. 28.>]</p>
	<p>제14조(활동비 지급) 환경감시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1. 10. 28.]</p> <p>제15조(증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 10. 28.]</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제15조의2(환경감시관) ①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 <개정 2019. 11. 26., 2021. 6. 15.></p> <p>1.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1조의2 및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 2. 「물환경보전법」 제75조부터 제82조까지 3. 「소음·진동관리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4.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 5. 「폐기물관리법」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7. 「환경분쟁 조정법」 제65조 및 제66조 8.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9. 「환경영향평가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11. 「하수도법」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13. 「먹는물관리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14. 「토양환경보전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41조 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8. 「수도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 19. 「지하수법」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및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p> <p>2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p> <p>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p> <p>22. 「악취방지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p> <p>2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p> <p>2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p> <p>2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p> <p>2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p> <p>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p> <p>28. 「습지보전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p> <p>2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p> <p>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p> <p>31. 「환경보건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p> <p>32. 「석면안전관리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49조</p> <p>3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p> <p>3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p> <p>3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p> <p>3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3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p> <p>3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p> <p>3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p> <p>40. 「자원순환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p> <p>41.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p> <p>4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p> <p>43.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p> <p>4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p> <p>45. 「하천법」 제94조제1호, 제95조제4호·제9호·제10호, 제96조제4호, 제97조 및 제98조 ② 환경감시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감시관은 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환경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 임면(任免),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감시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여주어야 한다.</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신설 2013. 5. 22., 2019. 11. 26.〉 [본조신설 2011. 4. 28.]</p> <p>제15조의3(환경감시조직) 국가는 환경법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감시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28.]</p>	
<p>제16조(사업장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또는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배출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그 오염도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4. 28.]</p>	<p>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관서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p>[전문개정 2011. 10. 28.]</p> <p>[제11조에서 이동 <2011. 10. 28.>]</p>
<p>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4. 28.]</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제18조(자료의 전산관리) 환경부장관은 환경법위반 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산관리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4. 28.]</p>	
<p>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4. 28.]</p>	<p>제17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p> <p>〈개정 2020. 11.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삭제 〈2020. 11. 10.〉2.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 명령 및 대집행3.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4.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검사(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5. 법 제17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p>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p> <p>〈개정 2020. 11.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2.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수입·판매의 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094호, 1999.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9호 아목 중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p> <p>②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4의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p> <p>제4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0의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지급</p> <p>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p>	<p>[전문개정 2011. 10. 28.] [제12조에서 이동 〈2011. 10. 28.〉]</p> <p>제18조(보고) 시 · 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10. 28.] [제13조에서 이동 〈2011. 10. 28.〉]</p>
<p>부칙 〈제16870호, 2000. 6. 27.〉</p> <p>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p> <p>⑥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p> <p>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3조 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p> <p>⑦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8953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6368호, 2001. 1. 16.〉 (지하수법)</p> <p>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② 내지 ⑤ 생략</p> <p>⑥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제4호의 기준란중 “지하수법 제19조”를 “지하수법 제20조”로 한다.</p> <p>부칙 〈제6452호, 2001. 3. 28.〉 (토양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p> <p>② 내지 ⑤ 생략</p> <p>부칙 〈제7167호, 2004. 2. 9.〉 (야생동 · 식물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⑯ 생략 ⑯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p> <p>⑰ 생략</p> <p>부칙 〈제19171호, 2005. 12. 9.〉</p> <p>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통보한 분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0244호, 2007. 9. 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20290호, 2007.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⑯ 생략 ⑭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p> <p>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6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p> <p>⑮ 생략</p> <p>제3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부칙〈제7168호, 2004. 2. 9.〉 (수질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⑫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p> <p>⑬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부칙〈제20383호, 2007. 11.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한다.</p> <p>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부칙〈제20428호, 2007. 11.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제2조제3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다.</p> <p>제2조제5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제1호 · 제2호 및 동조제2항 각호의 1”로 한다.</p> <p>② 내지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170호, 2004. 2. 9.> (악취방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자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를 “악취방지법 제15조”로 한다.</p> <p>⑥ 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291호, 2004. 12. 31.> (토양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6조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마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p>	<p>⑧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하며,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으로 한다.</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부칙 〈제7292호, 2004. 12. 31.〉 (유해화학물질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p> <p>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7297호, 2004. 12. 31.〉 (자연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7조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p> <p>제9조 생략</p>	<p>⑩ 및 ⑪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23268호, 2011. 10. 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4808호, 2013. 10. 22.〉</p> <p>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5836호, 2014. 12. 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법 제2조제2호아목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p> <p>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제2조제5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제한물질·금지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부칙 〈제7456호, 2005. 3. 31.〉 (자연공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p> <p>부칙 〈제7459호, 2005. 3. 31.〉 (수질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동호 사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동호 카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동조제3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2”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p>	<p>산정한 금액</p> <p>⑨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27737호, 2016. 12. 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제1호 중 “해당 오염물질별 배출허용 기준”을 “해당 오염물질별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p> <p>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목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1”로 한다.</p> <p>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를”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라목을”로 하고, 같은 호</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11호”로 하고, 동조제4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5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제1호·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하고, 제12조제3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호소(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를 “호소(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로 한다.</p>	<p>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4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제2호라목을”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제2호나목”으로 한다.</p>
<p>제6조 생략</p>	<p>④ 생략</p>
<p>부칙〈제7643호, 2005. 7. 29.〉 (수로업무법)</p>	<p>부칙〈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8조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⑪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2항제3호중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7호”를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로 한다.</p>	<p>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3조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부칙〈제8010호, 2006.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⑫부터 ⑯까지 생략</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3조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제2조 내지 제7조 생략</p>	<p>제3조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p>	<p>제3조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⑪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p>	<p>제3조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p> <p>제2조제5호 바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p> <p>제12조제3항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로 한다.</p> <p>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9조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6〉생략</p> <p>〈57〉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p> <p>제2조제2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39조제1항·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5조 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p> <p>제2조제2호 타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p>	<p>부칙 〈제31153호, 2020. 11. 1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된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p>	
<p>제2조제4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8338호, 2007. 4. 6.> (하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p>	
<p>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⑯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2항제3호중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을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으로 한다.</p>	
<p>제17조 생략</p>	
<p>부칙 <제8343호, 2007. 4. 11.> (관광진흥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⑯ 생략 ⑰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제2조제4호아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8370호, 2007. 4. 11.〉 (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p> <p>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5〉생략</p> <p>〈6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마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p> <p>제4조제2항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p> <p>제20조 생략</p> <p>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8조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p> <p>④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으로 하</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63조”로 한다.</p> <p>⑯ 생략</p> <p>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404호, 2007. 4. 27.> (대기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p> <p>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 생략</p> <p>⑨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차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바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로 한다.</p> <p>제12조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p> <p>⑩ 생략</p> <p>제14조 생략</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나목, 제2호나목·사목·카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 및 제5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55>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9313호, 2008. 12. 31.> (자연공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 까지 생략 ②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p> <p>부칙 <제9432호, 2009. 2. 6.> (식품위생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 까지 생략</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⑩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제4호 바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p>	
<p>제7조 생략</p>	
<p>부칙〈제9774호, 2009. 6. 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p>	
<p>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⑪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 제2항 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p>	
<p>제19조 생략</p>	
<p>부칙〈제10031호, 2010. 2. 4.〉 (악취방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제2호 자목을 삭제한다.</p>	
<p>부칙〈제10616호, 2011. 4. 2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p> <p>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p> <p>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p> <p>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p> <p>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9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p> <p>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의7제3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p> <p>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p> <p>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p> <p>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p> <p>⑦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p> <p>제3조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4의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p> <p>제4조제1항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0의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⑪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가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p> <p>제12조제7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⑫부터 ⑯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부칙 〈제10977호, 2011. 7.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p> <p>⑯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p> <p>제6조의 제목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로 하고, 같은 조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69조제1호”를 “제69조제1항제1호”로 한다.</p> <p>⑰ 및 ⑲ 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11016호, 2011. 8. 4.〉 (골재채취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자목 중 “골재채취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에 따른”으로 한다.</p> <p>②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자목 중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2호”를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790호, 2013. 5. 22.〉</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p> <p>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을 관리함으로써 유독물을 배출·누출하는 행위”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누출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영업”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수입·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로 한다.</p> <p>⑯부터 ⑰까지 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11979호, 2013. 7.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p> <p>부칙 〈제12521호, 2014. 3. 2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 중 “제68조제1호”를 “제68조제1항제1호”로 한다.</p> <p>부칙 〈제12738호, 2014. 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2항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한다.</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175호, 2015. 2. 3.></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603호, 2015. 12. 2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p> <p>⑧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p> <p><8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 ·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p> <p>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로 한다.</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제12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p> <p>제13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p> <p>〈85〉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6616호, 2019. 11. 2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17063호, 2020. 2. 1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p> <p>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2항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p> <p>⑧ 및 ⑨ 생략</p> <p>제18조 생략</p> <p>부칙 〈제18284호, 2021. 6. 15.〉</p> <p>(댐건설 ·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시행령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4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⑱ 생략</p> <p>제5조 생략</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별표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별표 1] <개정 2011.4.28.>

바다 등의 오염 규모 및 기준(제3조제3항제2호 관련)

구분	규모	기준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기준
1. 바다	10,000m ²	가. 수은	0.005mg/L
2. 하천	유하거리(流下距離) 500m	나. 구리	0.01mg/L
3. 호소	수역면적 10,000m ² 미만	다. 납	0.1mg/L
	수역면적 10,000m ² 이상	라. 6가크롬 마. 시안화합물	0.05mg/L 0.1mg/L
4. 지하수	50,000L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기준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별표 2] <개정 2011.4.28.>

집단폐사의 규모(제3조제3항제3호 관련)

구분	규모	
	자연산	양식산
바다	500kg	5,000kg
하천 · 호소	200kg	2,000kg

비고 : 마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측정한 무게를 기준으로 하고, 조개류의 경우에는 껍질의 무게를 포함 한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1. 10.>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위반부과금액의 부과기준

가. 위반부과금액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에 위반행위 횟수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기준부과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매출액의 구분	기준부과율	
	1회 위반	2회 이상 위반
1)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자	1천분의 25 이하	1천분의 25 초과 1천분의 50 이하
2)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자	1천분의 30 이하	1천분의 30 초과 1천분의 50 이하

나. 기준부과율의 세부 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별표 1에 따른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위반부과금액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2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법 제12조제2항에서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이란 위반행위 적발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적발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2. 정화비용의 부과기준

- 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화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은 불법적으로 배출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정화에 필요한 조사, 설계, 공사 및 검증 비용을 포함한다.
- 나. 사업자가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정화비용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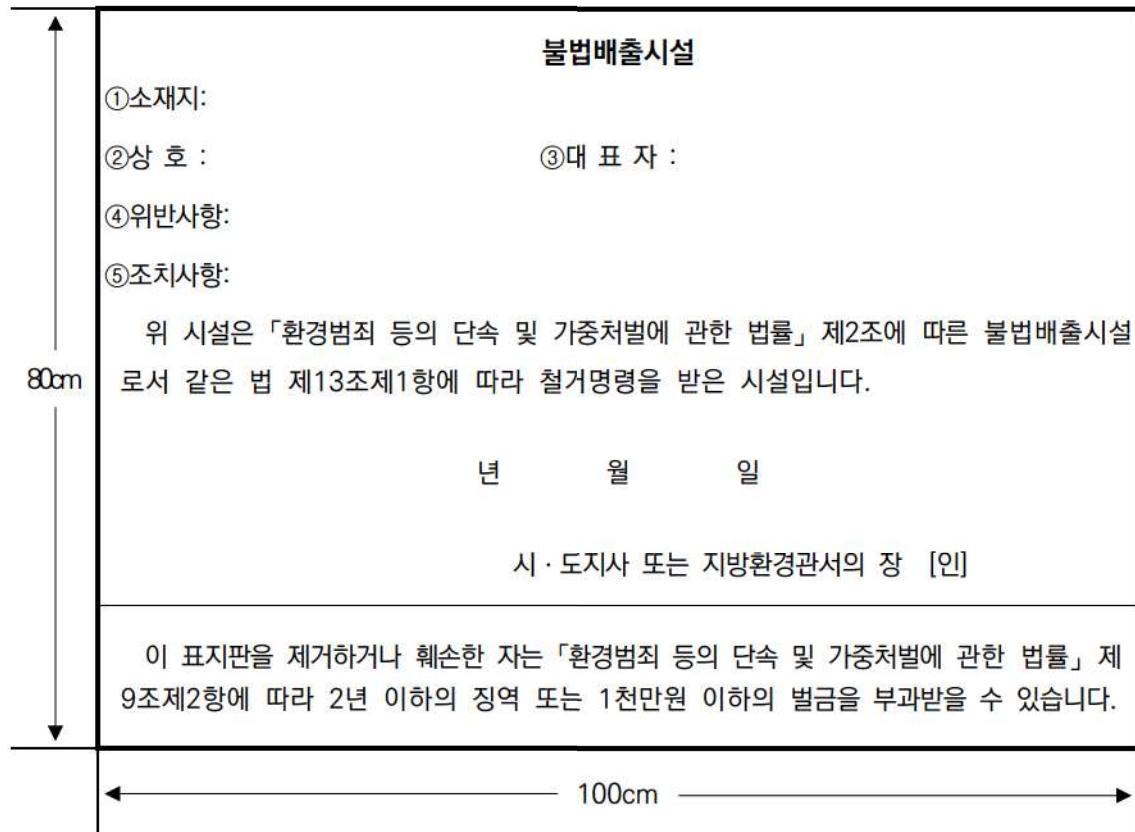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1.10.28.>

행정처분의 기준(제8조 관련)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 법 제2조제5호가목의 경우 가. 해당 지역에 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우 나. 해당 지역에 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용중지 폐쇄
2. 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경우 가. 허가 또는 승인이 정지된 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나.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다. 폐쇄 명령을 받은 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사용중지 폐쇄 철거
3. 법 제2조제5호다목의 경우 가. 해당 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한 경우 나. 해당 지역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중지 폐쇄
4. 법 제2조제5호라목의 경우 가. 허가가 정지된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경우 나.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경우 다. 폐쇄 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한 경우	사용중지 폐쇄 철거
5. 법 제2조제5호마목의 경우	폐쇄 (폐쇄 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한 경우에는 철거)
6. 법 제2조제5호바목의 경우	철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1.10.28.>

불법배출시설 표지판(제9조 관련)



C H A P T E R

03

(부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0-254호, 2020. 12. 4., 제정]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9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2. 4.]
[환경부고시 제2020-254호, 2020. 12. 4., 제정.]
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 044-201-616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 절차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과징금의 세부기준 및 절차

제2조(사건개요서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의2의 환경조사담당관, 이하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 각 호 각 목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받은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문서(이하 "사건개요서"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과징금 처분을 위한 조사를 개시한다. 이 때 사건개요서는 단속 사건인 경우 행정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에, 형사 사건인 경우 해당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기록 검찰송치 후에 작성한다.

② 사건개요서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조사 대상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상호, 대표자 성명, 법인 본점 주소지, 사건이 발생된 해당 사업장 주소 등),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적용 법조, 주변 환경오염 규모, 중소기업인지 여부(총매출액 기준), 자진신고 여부 및 수사협조 내용 등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작성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과징금산정의 원칙) 과징금은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하의 금액(이하 '위반부과금액'이라 함)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함)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4조(매출액의 산정) 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피조사자가 속하는 전체 법인의 총매출액이 아닌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이하 '해당 사업장'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 ③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피조사자에게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도록 고지한다. 이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⑤ 피조사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매출액 자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서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매출액을 제출해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 목적으로 작성된 매출액을 제출해야 한다.
- ⑥ 피조사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전자공시시스템, 국세청 자료, 피조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총매출액을 산정한 후 전체 사업장(해당 사업장이 속한 법인 소속의 전체 사업장)의 투입비용 대비 해당 사업장별 투입비용 비율을 총매출액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추정한다.
- ⑦ 피조사자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투입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지만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피조사자로부터 관련 영업 및 회계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서류, 전산자료 등을 제출받아 직권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⑧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에서 부품생산을 한 후 다른 장소(경계 외)로 운송하여 완제품으로 조립·포장·출고하는 경우와 해당 사업장에서는 생산만을 담당하고 판매는 다른 사업장이 하는 경우에도 제6항과 같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또는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이 400억원 이하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액과징금(이하 "정액과징금"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부과한다.

제5조(위반부과금액의 산정) 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 및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반부과금액을 정한다.

1.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1회 위반한 경우 5억원 이하의 금액,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금액
2.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자로서 1회 위반한 경우 6억원 이하의 금액,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금액

②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 각 호 각 목의 위반행위를 1회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위반부과금액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 각 목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합산하여 위반부과금액을 산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
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마.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기록 또는 제출한 자
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8을 곱한 금액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나.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다.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같은법 제25조제9 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마.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3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사.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아.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기록 또는 제출한 자
자. 「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기록 또는 제출한 자
차.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카.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6을 곱한 금액
- 가.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라.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4를 곱한 금액
- 가.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자

- 나.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라.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마. 「하수도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바. 「하수도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린 자
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
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2를 곱한 금액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라.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마.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사.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은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 ③ 시행령 별표 1 비고 2에 따른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26을 곱한 금액을 위반부과금액으로 산정하고,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31을 곱한 금액을 위반부과금액으로 산정하되, 제2항 각 호 각 목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합산하여 위반부과금액을 산정한다.
- ④ 시행령 별표 1 비고 2의 ‘같은 위반행위’는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 각 호 각 목의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 ⑤ 시행령 별표 1 비고 2의 ‘적발된 날’ 또는 비고 4의 ‘적발일’은 단속일, 고발장 접수일, 수사 개시일, 자진신고 접수일, 과징금 조사개시일 중에 빠른 날짜로 한다.
- ⑥ 위반부과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반부과금액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액에 더하여 위반기간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합산한다. 이 때 위반기간은 최초 위반행위일로부터 최종 위반행위일까지의 전체기간을 말한다.
1. 위반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3을 곱한 금액
 2. 위반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6을 곱한 금액

3. 위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0분에 10을 곱한 금액

⑦ 하나의 행위가 여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중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부과금액을 산정한다.

⑧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1건으로 처분할지 여부는 위반 법률의 상호 관련성, 위반행위 간 연계성, 위반행위 유형과 시기의 중첩성, 배출물질의 연관성, 경제적 제재 목적의 달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본조에서 정한 위반부과금액과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감면금액을 적용하여 각 위반행위별 위반부과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위반부과금액으로 부과한다. 다만, 각 위반행위별 위반부과금액의 총합은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정화비용의 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정화비용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오염물질 잔존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오염물질 잔존검사는 현장확인 및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통해 확인하고, 검사기관의 검사결과가 없으면 국립환경과학원, 지방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등에 시료채취 검사를 요청한다. 다만, 현장확인 결과 정화비용 면제 또는 유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구체적인 정화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비용은 정화비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④ 오염물질과 기타의 물질이 혼재하여 정화비용을 분리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 사업자에게 정화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피조사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산정된 정화비용의 합을 부과한다. 이때, 사업장별 산정 금액은 불법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⑥ 정화비용 부과대상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오염물질 배출량, 불법행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율을 산정한 후, 정화비용 총액을 기여율로 나눈 사업자별 납부 금액을 각각의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기여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에게 정화비용 총액을 부과하고, 사업자는 정화비용 납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정화가 완료된 경우

2.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없거나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정화비용을 부과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비용을 유보한다.

1. 피조사자가 스스로 정화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화비용 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위반부과금액을 먼저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정화명령 등 다른 행정수단의 진행경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화비용 부과 또는 면제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⑨ 정화비용을 유보하는 경우 위반부과금액(제1차 과징금)을 먼저 부과하고 정화비용(제2차 과징금)을 추후에 부과할 수 있다.

⑩ 정화비용의 부과 여부는 다른 법률에 의한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조(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①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신고자 감면신청서를 환경부장관(환경조사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연락처, 신청서를 제출하는자의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2. 신고자 등이 참여한 불법행위의 개요 및 불법행위 인정 여부

3. 당해 불법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4. 당해 불법행위에 대한 환경부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5. 당해 불법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환경부장관(환경조사담당관)에게 자진신고하고 시정한 자(이하 '자진신고자'라 한다)에게 자진신고 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환경부가 인지('민원', '내사', '고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전에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의 위반사실을 서류 또는 자료의 형태로 환경부장관(환경조사담당관)에게 자진신고 및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증거가치와 조사협력의 정도에 따라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환경부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환경부장관이 과징금 처분을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과징금 감면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서 신고 및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증거가치와 조사협력의 정도에 따라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자진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의 증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영향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예컨대, 정화 또는 원상회복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를 의미한다. 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자진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시정 기간을 환경부장관에게 소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위반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자에게는 증거가치와 조사협력의 정도에 따라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2인 이상이 관여한 행위(이하 '공동불법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자에게는 증거가치와 조사 협력의 정도에 따라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조사협력의 정도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자진신고자가 알고 있는 당해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
2. 당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사실 확인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
4. 임직원(전직 임직원 포함)이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
5. 불법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 ⑥ 제5항과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진신고자가 제출한 증거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 당해 공동불법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의 확인서, 진술서 등 공동불법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및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2.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 ⑦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자진신고 감경규정을 적용한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한 자
 2. 최근 5년 이내에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반복한 자
 3. 위반행위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 등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과징금을 감경하는 것이 부적절한 자

제8조(재량감면) 환경부장관은 피처분자의 재정상태, 위반정도의 경미성,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정되고 제7조에 따른 감면으로 결정된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추가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전통지 및 피조사자의 의견제출) ① 환경부장관은 피조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1. 과징금 금액에 대한 의견
2.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상회복을 하면 정화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
3.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서 제출
4.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 과징금, 과태료,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

② 피조사자의 의견제출 기한은 10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한에 산입하지 않으며, 마지막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10조(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피조사자의 의견이 제출되면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사실확인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에게 사전통지 후 피조사자의 의견이 제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기된 사유 및 개최 일정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서의 작성) 환경부장관(환경조사담당관)은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장 과징금심의위원회

제12조(과징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과징금 부과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과징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 내 환경감시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법률 또는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와 4급 이상 환경부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환경부 내 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이 위원이 된다.

⑤ 위원장은 전임 환경조사담당관 중 1인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5인 이상이어야 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항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⑨ 위원이 임기 중간에 그 직을 사임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남은 임기만을 수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석으로 유지할 수 있다.

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비밀엄수 및 해당 사건의 피처분자로부터 과징금 관련 소송 수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별도의 임명장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과징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징금 부과 여부와 최종부과금액

2. 위반부과금액과 감면사항 (자진신고자 감면규정 및 재량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및 감면금액)

3. 정화비용 부과 여부와 부과금액
4. 기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중요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사건으로 인한 과징금 중 정화비용을 제외한 위반 부과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⑤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심의에 조사·단속·수사 담당 공무원 또는 정화비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⑦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등에 대한 자문·고문등으로 있는 사건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사건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사건
 - ⑨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결정한다.
 - ⑩ 위원 본인이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4장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와 환급

- 제14조(과징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부과대상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부과대상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 ③ 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부과대상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

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피조사자에 대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자본잠식의 정도
2. 최근 3년간 당기 순이익상황
3. 법정관리, 화의 및 기업개선작업의 개시 여부
4. 세금, 과징금 등의 체납 여부 및 정도
5. 임금체불 여부 및 정도
6. 최근 3년간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현금현황

제15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과징금 금액이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③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

- ④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본조에 의거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5호의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과징금 납부명령의 내용
 2. 납부기한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또는 분할납부신청의 경우에는 분할횟수·분할납부시기·분할납부금액
 3. 신청이유
 4. 제공가능한 담보에 관한 사항
-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0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체납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체납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한 기한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과징금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 ① 과징금의 환급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환경부가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로서 패소(일부패소 포함)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벌금, 과징금, 과태료, 배출부과금의 중복 부과로 인한 환급
 3. 환경부 직권에 의한 과징금 부과결정 취소
-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될 과징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18조(과징금 업무매뉴얼) 환경부장관은 본 고시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산정과 절차 등에 관한 업무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254호, 2020. 12. 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지서식)**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자진신고자 감면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자	법인 또는 사업장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		
불법행위의 개요 및 불법행위 인정 여부		
자진시정 여부		
증거 및 증거목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자진신고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며 향후 관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신고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약)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증거 및 증거목록에 기재한 자료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의안번호	제0000-00호	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	0000. 00. 00. (제 00 회)	

심 의 요 청 서
- (사 건 명) -

“(사건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환경부장관
(환경조사담당관)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을) 서식]

목 차

I. 사건의 개요

II. 피조사자 현황

III. 관련 법규정

IV. 심의요청사항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환

경부 과징금심의위원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염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3. 본인은 임기 기간 중 과징금 처분의 피처분자로부터 과징금 관련 소송 수임을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기관명(직위) :

성 명 : (서명)

환경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위 촉 장

성명 :

소속 :

임기 :

귀하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분할납부**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과징금 납부자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당초 과징금 납부명령의 내용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하려는 과징금의 금액
부과일자	납부기한	금액	

<input type="checkbox"/>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input type="checkbox"/> 분할납부	— 회	분납횟수	회차	납부기한	분납금액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신청 이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제공가능한 담보에 관한 사항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이유와 제공가능한 담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뒤쪽)

유의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음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

처리절차

